## 2021년 아라싸인이 제공하는

# 비대면 바우처수요기업

빠르게 신청하기

#### [신 청 및 모 집 개 요]

- □ 사업목적: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분야 육성
- □ 모집대상 : 중소기업 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)
- □ 모집규모: 60,000개사 내외 ('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'21년도에 재신청 불가)
- □ 모집방식: 2021년 2월 16일(화) 부터 선착순 (예산소진 시 까지)
- □ 지원내용: 비대면 서비스 도입·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(자부담 10% 포함) 이내 바우처\* 지급
  - \* 바우처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최소 2개 이상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
- □ 지원방식: 바우처 방식 (1개 공급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바우처 금액은 200만원 한도)
  - ·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 서비스를 선택 후, 결제·이용
  - \* 지원 중 휴·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,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
- □ 지원조건: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% (기업당 최대 360만원)까지 지원하며, 나머지 비용은 기업이 부담
- □ 서비스 제공 분야 :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서비스

## ① 비대면바우처플랫폼에 접속

https://k-voucher.kr/에 접속 → [수요기업 회원가입] 선택 → 수요기업(구매자) 가입하기





## ② 약관동의 및 휴대폰 실명확인

## 약관동의

#### 이용약관

1. 목적

이 약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K-비대면바우처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, K-비대면바우처플랫폼과 이용자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2. 약관의 효력 및 변경

✓ 약관에 동의함

#### 실명확인

개정 정보통신법 제23조에 따라 회원 가입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

휴대폰 본인 인증에 동의하시겠습니까? ✓ 본인인증

※ 바우처 신청자(결제자)의 핸드폰번호로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③ [수요기업 회원가입] 정보입력 → 회원가입(심사접수)

로그인 정보(바우처 이용	<b>자정보)-</b> 수요기업의 바우처결제자 정보를 기입 해주세요.	*필수입력사항
0101E1 *	중복확인 (영문 소문자, 숫자로 8~15자 이내 입력).	
기업 정보		*필수입력사항
수요기업명(한글) *		
제출서류		*필수입력사항
사업자 <u>등록증 *</u>	파일선택(BMP,GIF,JEPG,PNG,PDF) 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체가능)	
※ 필수서류 : ①사업자등록증, ②국세완납증명서, ③지방세완납증명서, ④법인은 등기부등본		
<b>담당자-</b> 공급기업에 정보가 표기 및 제공됩니다. □ 대표연		표연락처와 동일
담당자 성명 *		
비대면 바우처 지급 선택 및 운영기관 선택		
•	♪ 신한바우처카드(개인/법인카드) ○ 제로페이(zeropay 상품권)	

※ 운영기관 : ①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(042-867-9694), ②벤처기업협회(02-6331-7083), ③이노비즈협회(031-628-9631), ④메인비즈협회(02-2230-2152) 중 택일

## ④ 운영기관 심사 → 창업진흥원 예산반영 → [아라바우처] 신청

#### 운영기관 심사기간 필요



## **수요기업 선정 심사 결과 : 심사확정** → 예산배정으로 바뀌면 [바우처카드] 신청

심사가 확정되면 아래와 같이 바우처지원기간과 예산한도가 표기 됩니다.





▶ 집사기간이 길어지면 회원가입(심사접수)시 선택한 운영기관에 전화상담을 하는 것도 방법



K-비대면바우처플랫폼의 "재택근무(협업Tool)"에서 "아라싸인"을 검색하여 [아라바우처신청]과 [서비스요청]을 하세요!



<b>아라바우처10</b> 정상가격 770,000원	
아라싸인지원금 27만워	
2722	
정부바우처지원금	
45만원	
본인부담금	
5만원	





#### [ 참 조 사 항 ]

#### 필수 제출서류 발급기관

- 1) 사업자등록증명 → 국세청 홈택스 (https://hometax.go.kr)
- 2) 국세완납증명서 → 국세청 홈택스 (https://hometax.go.kr)
- 3) 지방세납세증명서 → 정부24 (https://gov.kr)

#### 신 청 자 격

####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

중소기업의 범위 → 소상공인, 소기업, 중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등

[주요업종별 중소기업의 규모]

- ① 의복등 제조업 ~ 가구제조업 : 평균매출액 1,500억원 이하
- ② 농업.임업.어업 ~ 도매및소매업 : 평균매출액 1,000억원 이하
- ③ 음료제조업 ~ 정보통신업 :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
- ④ 기계장비수리업 ~ 기타개인서비스업 :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
- ⑤ 숙박및음식점엊 ~ 교육서비스업 :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